

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민경환 위원입니다.

정희시 협의 조정된

충청북도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.

충청북도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○ 안 제15조제1항중 “도 금고 또는 시중은행”을 “도 금고”으로 하고, 제2항중 “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”를 “충청북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다.

○ 안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중 “내국인”을 “충청북도 도민”
으로 각각 한다.

○ 안 제37조제1항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8. 교육훈련보조금·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
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
못하는 경우로 한다.

이상으로 충청북도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